

# 「2026년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점포환경개선 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구리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개선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5. 22.(금)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장

## 1

###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구리시 소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점포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안정적 자립 기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26. 6. 1. (월) ~ 2026. 9. 4. (금)
- **모집기간**: 2026. 6. 1. (월) ~ 2026. 6. 30. (화)
- **지원대상**: 창업 6개월 이상 구리시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 2025. 11. 30. 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 지원절차

접수	평가	선정발표	사업진행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홍보 및 접수	① 서류심사 정량평가(40점) ② 현장심사 정성평가(60점)	개별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	공사진행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만족도 조사
'26.6.1.~ 6.30.	'26.7.1.~7.10.	~ '26.7.15.	'26.7.20.~8.28.	~ '26.9.4.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신청 분야 (1개 선택)	세부 내용 선택	지원금
□ 점포환경개선 (29개소)	<input type="checkbox"/> 상품진열대, 판매대 등 <input type="checkbox"/> 내부인테리어 <input type="checkbox"/> LED조명 및 전기공사 <input type="checkbox"/> 식당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b>※ 전기, 전자, 기계,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b>	최대 250만원
□ 간판 및 시스템 (15개소)	<input type="checkbox"/> 간판(불법 간판 제외) <input type="checkbox"/> 스마트결제 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위생시스템(살균기, 매장방역 등) <b>※ 그 외 세부 내용은 재단의 판단에 따라 결정</b>	최대 200만원
<b>자기부담금 필수(신청 분야의 총사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초과금 본인 부담</b>		

### ○ 신청 시 유의사항

1.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2.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신청 분야 변경 불가, 세부 내용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4. **간판·시스템개선 분야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및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옥외광고 표시신고(허가)필증 첨부 시 가능) 등 위법 품목 지원 불가
  - 지원가능 : 식품위생 살균소독, 닥트, 식당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진열대, 판매대 등
5.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을 취소함
6.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개선·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자가 신청 후, 선정 통지받은 이후에 시스템개선 등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7. 기한 내 제출된 신청서류로 선정 심사평가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 문자로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함

## □ 모집규모: 44개소 내외

지원대상	사업화지원 유형	지원규모
창업 6개월 이상 구리시 소재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간판·시스템 개선 지원	44점포 내외

## 2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6. 1. (월) ~ 6. 30. (화), 18:00 (기한 엄수)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바로 홈페이지( <a href="https://ggbaro.kr">https://ggbaro.kr</a> ) 온라인 신청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지원 필요 시, 하단 장소로 기간 내 방문 - 장소 :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7번길 50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1층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기간 : 매주 화요일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오후 1시~5시
--------	--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 신청취소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참고2]
2.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5.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6.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7. ‘23년~’26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0. 저신용자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한자에 한함(발급불가 시 참여 제한)
11.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 지원사업 유사분야 중복지원 불가
12. 2026년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13. 종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제외
14. 가족구성원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원 가능
15. 개업일이 2025년 11월 30일 이후인 소상공인은 지원 불가
16. 동일 사업장에 다수 사업체로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지원 가능
17. 불법건축물 운영,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자

### 3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창업 6개월 이상 구리시 소재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26. 6. 1.)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1] 확인필수
- ▶ [참고2]의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기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1&gt; 지원신청서</li> </ul>	경기바로(ggbaro.kr)에서 입력 *비교견적: 200만원 이상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2&gt; 추진계획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성실이행서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3&gt;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4&gt; 의무사항 이행각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5&gt; 청렴 이행서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서식6&gt;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비대상 확인서(간판시공 시)</li> </ul>	
불법 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대장</li> </ul>	① 온라인 발급: 정부24 (www.gov.kr) ② 오프라인 발급: 시청(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납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li> </ul>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시청(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소상 공인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확인서</li> </ul>	①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메뉴-신청서 작성-재무/근로자 정보입력-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b>없는</b> 경우)</li> <li>-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ul>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FAX 수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b>있는</b> 경우) 택1</li> <li>-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부과내역)</li> <li>-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li> <li>-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li> </ul>	①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발급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사업자: '25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li> <li>-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li> <li>- 사회적기업 인증서</li> </ul>	① 온라인 발급: 홈택스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세무서 ③ 사회적기업 인증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5년 1년전체) (일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li> </ul>	① 온라인 발급: 홈택스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세무서

가점 서류	<b>재단 교육 이수</b> ■ 우리가게 온라인 채널 만들기 ■ 1:1 금융 컨설팅	경기바로(ggbaro.kr)를 통해 증빙자료 제출
	■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카카오톡 친구추가 ■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인스타 팔로워	
	■ 구리지역화폐 가맹점 ■ 온누리 가맹점	기관 리스트 활용(제출 생략)

## 5      **지원내용**

### 5.1      **점포환경개선: 29개 업체**

- **지원내용:** 상품진열대 및 판매대, LED조명 및 전기공사, 식당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등 실내 인테리어
- **지원금액:** **최대 250만원** ※ 자부담: 공급가액 10% + 부가세

### 5.2      **간판 및 시스템 개선: 15개 업체**

- **지원내용:** 간판(불법 간판 제외), 스마트결제 시스템, 위생시스템 등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 자부담: 공급가액 10% + 부가세 10%, 초과금 일체

## 6      **사업 진행 절차**

### □ 진행절차 및 일정(안)

접수	평가	선정발표	사업진행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홍보 및 접수	① 서류심사 <b>정량평가(40점)</b> ② 현장심사 <b>정성평가(60점)</b>	개별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	공사진행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만족도 조사
'26.6.1.~ 6.30.	'26.7.1.~7.10.	~ '26.7.15.	'26.7.20.~8.28.	~ '26.9.4.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정량(40), 정성(60)

○ 1차-서류심사 (정량평가)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업력	10년 이상	10	
	5년 이상~10년 미만	7	
	3년 이상~5년 미만	5	
	3년 미만	3	
매출	5천만원 미만	10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7	
	1억 이상~	5	
종업원수	0명	10	
	1~2명	8	
	3~4명	6	
	5명 이상	4	
재단 교육 이수	우리가게 온라인 채널 만들기	1	
	1:1금융 컨설팅	1	
구리지역화폐 가맹점		3	
온누리 가맹점		3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카카오톡 친구추가		1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인스타 팔로워		1	
합계		40	

○ 2차-현장심사 (정성평가)

- 심사기준

구분		세부항목	배점	
현 장 평 가	정성평가 (60점)	지원 적합성	사업지원의 필요성 (노후 상태 진단 등 실물평가)	20
			시공견적 타당성	20
		자원의 효과성	사업화 지원을 통한 효과성	10
		신청자 역량	경영 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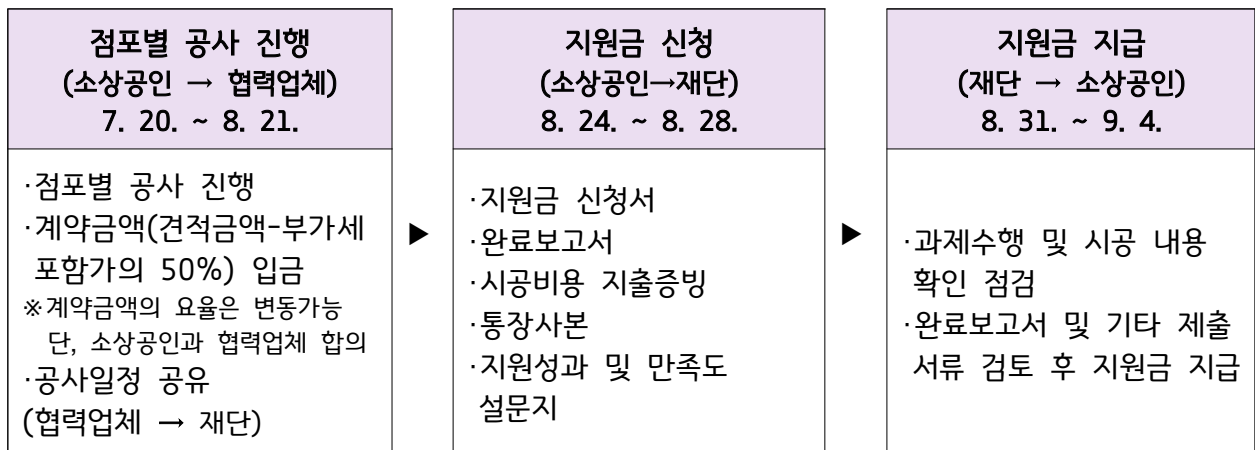
☞ 지원요건 충족자 중 총점 60점 이상을 대상으로 상위 점수순으로 선정 예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우선순위 항목인 매출>업력>종업원수 항목 기준으로 순위 결정

## □ 선정발표

- 발표일정 : 2026. 7. 15. (수) 예정
- 통지방법 : 개별 문자 통지 및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 통지대상 : 선정자
- 선정 취소
  - ① 신청서 허위 작성, 신청자 본인이 서명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② 점포개선 과제수행 허위, 부실, 불성실, 부정한 거래 등 기타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법 위반기업으로 확인되거나, 과제 시행으로 관련법률 위반 및 행정처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④ 최근 3년 내(2023년~2026년) 경기도 및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⑤ 완료보고 미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증빙 부실 제출, 기한내 과제 미완료 등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지원금 지급 절차



- 점포 공사 : 2026. 7. 20.(월) ~ 8. 21.(금)
  - 지원 시 견적서 제출한 협력사에서 공사 진행 (지원점포 필수사항)
  - 협력사가 아닌 구리시 관내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 진행할 경우
  - ※ 지원 점포가 별도로 희망하는 시공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가 협력사 기준에 준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협력사 견적이 이하로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진행 가능

○ 지원금 신청기간 : 2026. 8. 24.(월) ~ 8. 28.(금)

- 증빙 서류 제출

항목	제출자료 목록【별첨2】
필 수	1. 지원금 신청서【별첨 서식 제6호】
	2. 완료보고서【별첨 서식 제7호】
	3. 시공비용 지출증빙 서류 ①전자세금계산서 단, 시공(제작)업체가 영세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만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가능 ②계약금 이체 확인증(입금자 성명/수령자 성명/ 계좌번호/ 입금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단, 신용카드 결제, 현금 거래 불인정, 선정통지 이전 시행한 내용은 불인정 ※ 주의 : 제작(시공) 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자 업종의 외주 시공업체 시공은 지원 불인정
	4. 통장사본(지원금 입금받을 점포주 본인 통장)
	5.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별첨 서식 제8호】

○ 지원금 지급 : 2026. 8. 31.(월) ~ 9. 4.(금)

- 완료 보고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확인

※ 보고서 및 증빙 자료 미비사유로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

→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검토 완료 순으로 소상공인 사업자명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원금 지급

- 신청자(소상공인)가 계약금(최소 50%)을 협력업체에 선입금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시공(제작)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선정점포가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시공(제작)비용 지출 시 현금 대면 거래, 현금 입금, 카드 결제 영수증 지출 증빙은 인정 불가함
- 시공비용 지출증빙은 은행 계좌간 입금확인증, 온라인 이체 확인증, 입금통장 거래 내역으로 가능하며, 입금자, 수령자, 계좌번호가 명확해야 함 (입금자는 반드시 신청업체 대표가 시공업체 대표에 입금함)
- 시공(제작)비용 지출 및 자부담금 입금 시에는 대표자(또는 법인) 본인 통장에서 거래 업체(시공업체) 대표자의 본인(또는 법인) 통장 계좌로 온라인 이체 입금해야 함(가족 관계 포함 제3자 거래 불인정)
- 선정점포는 비용 지출 시 시공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 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
- 지원금은 최초 선정 시 결정된 금액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초과금 및 부가세 등은 본인 부담임
-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음

○ 신청(지원) 포기 및 취소【제9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 선정 점포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하는 경우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점포가 사업 수행 중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점포는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에게 지원이 이관됨

## 7

## 유의사항

- 사업화 지원의 경우 경기도 및 구리시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유사분야(2023년~2026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경영환경개선, 마케팅 지원사업 등)
  - ※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 사업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지원금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사업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사업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 되며,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불법사항 확인 시 신청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관련 사항 확인 시 지원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내 폐업,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폐업의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및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 서류+현장 심사 결과 합계점수가 60점 이하인 점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 031-523-3956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10:00~17:00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1]

사업화지원 대상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

구분	제재 및 환수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지원 중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완료한 경우	3년	전액환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 된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전액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협약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 위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편성·집행한 경우 * 단순착오, 지침 미숙지의 경우 사업기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금액 반납 처리 후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1년	해당금액 환수
	완료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종료 후 사업체 유지 의무(협약만료일로부터 1년)를 위반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전액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반납에 불응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타 지원사업과 중복제출 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카드결제 취소 등 사후 적발된 경우 포함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영구배제	전액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선정된 경우 등	영구배제	전액환수

[참고2]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 평균 매출액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0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6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4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15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3]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표준산업분류	업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b>부동산컨설팅 서비스</b>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b>복권 판매업</b>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sup>2</sup>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